#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

세부사업명	종자산업기반구축				세목		치단체 본보조		
내역사업명	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				<b>예산</b> (백만원	<u>l</u> )	6,489		
사업목적	○식량·원예·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(종자)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· 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 지원								
사업 주요내용	○ 종자보급 체계가 미비한 품목(씨감자, 고구마종순, 특수미, 약용작물 종자, 버섯종균, 육묘, 딸기종묘, 과수묘목, 화훼종묘, 녹비·사료작물, 종묘삼, 마늘 종구)에 대한 종묘 생산기반(시설·장비) 지원								
국고보조 근거법령	○ 종자산업법 제10조(재정 및 금융 지원 등)								
지원자격 및 요건	○ 지자체 및 농업법인 / 국고 30~50%, 지방비 30~50%, 자부담 40%								
지원한도	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2~30억원 차등지원 - 대규모(2년) : 20~30억, 중규모(1~2년) : 8~20억, 소규모(1년) : 2~8억								
<b>재원구성</b> (%)	국고 3	80~50	지방비	30~50	융	자		자부담	40
	(단위 : 백만원)								
	구 분	2017년		2018년		2019년		2020년	
연도별	합계	18	,214	17,303		17,303		14,722	
재정투입 현황	국 고	7,	565	7,210		7,210		6,489	
	지방비	6,665		6,344		7,210		6,489	
	자부담	3,	984	3,749		2,	480	1,7	44
담당기관			담당과		담당자		<b>+</b>	연락처	
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			종자생명산업과 시도 사업담당과		양미희 -		5	044-201-2482 -	
신청시기	정기(전년도 9~10월)			Y	<b> 업시행</b>	기관	자치	단체	
관련자료	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 사업시행지침서								

# I 주요내용

#### 1. 사업대상자

- 지방자치단체 : 시·도 및 시·군(농업기술원, 농업기술센터 등)
- 생산자단체
- ①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
- ② 「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-8호(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)」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
  -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
  -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**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**
  - 「농업협동조합법」제11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 인가한 **조합공동사업법인** 및 같은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**품목조합연합회**
  - 「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 자조금을 조성·운영하는 **자조금단체**

## 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의 경우,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호 관련 [별표6] "농업법인의 지원조건 및 사후 관리기준"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
- 사업부지 사전 확보
  - 사업 예정 부지에 종자생산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
    - \* 사업부지 변경 제한: 사업자선정 후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함. 단, 당초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형질변경이 불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되므로 사업 신청 전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, 이로 인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은 사업자 귀책사유에 해당됨
  -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

#### ○ 종자업 등록

-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. (단,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는 제외)

#### ○ 육묘업 등록

-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규정에 따른 육묘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. (단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는 제외)

#### ○ 농업경영정보 등록

- 농업경영체가 농림 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 의무화 및 시·군 등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등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실시
- 소속 시·군(사업자가 시·도인 경우 시·도)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기준

지원분야	재배면적(이상)	지원분야	재배면적(이상)
○ 씨감자	300ha	ㅇ과수 묘목	500ha
ㅇ고구마 종순	300ha	ㅇ화훼 종묘	_
ㅇ약용작물 종자	500ha	ㅇ녹비작물 종자	_
ㅇ 버섯 종균	연면적 2ha	○종묘삼	200ha
○육묘(실생·접목)	_	ㅇ마늘 종구	300ha
ㅇ딸기 종묘	50ha	ㅇ특수미·맥류·잡곡	_

- \*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세별지 제2호 서식] 및 증빙자료 제출
- \* 재배면적 기준이 사업신청 필수조건은 아니며, 동일 분야 심사시 가점 등 반영

#### 3. 지워대상

#### ○ 지원내역

- 시설 : 유리온실, 비닐온실, 망실하우스, 조직배양실, 종균배양실, 저온저장고, 작업장, 양액 재배시설, 건조시설, 정선시설, 기타 종자·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

- 장비: 파종기, 수확기, 선별기, 배지배양기, 종균접종기, 지게차, 동력운반차, 발아시험기, 종자·묘 생육환경 모니터링 장비, 기타 종자·묘 증식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(승용·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)

\* 시설·장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

## ○ 시설설치 지원기준(단가)

시설구분	기준단가	비 고
유리온실	600천원/m² (1,000m² 기준)	◦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- 구조물, 피복(유리), 전기시설, 천측창 자동개폐장치, 난방, 차광, 환기팬, 포그시스템 등 포함(아래의 내부시설 제외)
비닐온실	90천원/m² (1,000m² 기준) 50천원/m² (10,000m² 기준)	○비닐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- 구조물, 피복(비닐), 커튼, 자동개폐장치 등 포함(아래의 내부시설 제외) ○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○자재 소요내역 및 시설단가는 (사)한국농업시설협회(www.akaf.or.kr) 참조
온실내부시설	90천원/m²	◦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, 복합환경제어시설, 용수 공급시설, 제습시설, 살수장치 등 종묘생산에 필요한 온실(유리ㆍ비닐) 내부시설 설치 비용
망실하우스	40천원/m² (10,000m² 기준)	▫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
조직배양실	2,000천원/m² (330m² 기준)	∘ 다음의 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- 배양실, 멸균실, 무균실, 실험실, 검정실, 기계실, 기타 부속 시설 등
종균배양실	650천원/m² (330m² 기준)	∘ 다음의 내부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- 전기시설, 소방시설, 냉장·냉동시설, 냉·난방시설, 가습시설, 환기 시설, 공조시설 등
저온저장고	1,000천원/m² (330m² 기준)	◦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기준단가 적용(99∼660m² 기준)
정선시설	1,700천원/m² (330m² 기준)	∘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 기준단가 - 대략정선기, 정밀정선기, 저장빈, 포대봉합기 등

- 주) 1. 정해진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하되, 설치규모·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적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
  - 2.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발급한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(견적서, 원가계산서 등)를 구비(소관 시·도에서 타당성 검토)
  - 3.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·장비는 업체 견적, 시중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

#### ○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

중요재산	사후관리기간	처분제한기준
■ 부동산 (토지, 건물, 유리온실 등)	10년	
■ 부동산의 종물 (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등)	10년	「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, 양도, 교환,
■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·장비 (이동식 5백만원, 고정식 10백만원 이상)	7년	용도변경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 등을 금함
■ 부동산이 아닌 시설	7년	

- 주) 1.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, 지주대,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
  - 2. 보조시설 관리대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·관리

- 지원제외대상
  -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
  - 시설·장비 임차료. 종자·상토구입비 등 운영자금
  -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

##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우수한 종자·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·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(시설·장비)

## 5.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

○ 지원조건

- 지자체 : 국고 50%, 지방비 50%

- 민 간 : 국고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40%

\*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상위단계부터 보급종까지 생산하는 사업 추진 시, 1ha이상 대면적이 소요되는 종묘생산용 하우스 설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과 협약(10년 이상)을 체결하고 자부담(생산자단체 및 농업인)을 추가하여 추진 가능(단, 사업비 전체의 30%이내)

## ○ 개소당 지원기준

구분	총 사업비	지원분야	비고	
(사업기간)	(국고+지방바+지부담)	/\ U L - F	H 1-1-	
대규모 (2년)	20~30억	<식량>         고구마 종순         씨감자         특수미·맥류·잡곡	- 사업자 여건 등을	
중규모 (1~2년)	8~20억	<원예> □ 과수 묘목 □ 딸기(원원묘, 원묘·보급묘) □ 마늘 종구 □ 화훼 종묘 <	고려하여 규모별 신청 가능 - 육묘(실생·접목)를 제외한 나머지	
소규모 (1년)	2~8억	<특용·기타>	품목은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신청 가능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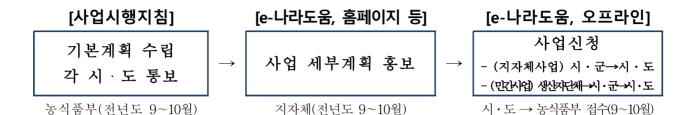
- 주) 1. 개소당 총 시업비 범위 내에서 시업신청(부담비율 준수), 지방비 및 지부담 추가를 통한 규모확대 가능
  - 2. 시업신청자가 없는 경우, 추가공모를 통해 시업비 조정신청 가능(최소 지원규모의 70% 이상)
  - 3. 1년 추진사업의 기간연장(1년→2년) 및 2년 추진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분 비율은 사업대상자(지자체)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·조정 할 수 있으며, 2년 사업의 경우 이월액 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 실집행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
  - 4. 버섯종균의 경우 소모성기자재(회수기능 종균접종용기 등)는 총시업비의 5% 이내 범위에서 허용
  - 5. 육묘는 공정육묘시스템(파종시스템, 발아실, 접목로봇, 활착실 등) 구축 신청자 우선 선정
  - 6. 일반 벼 육묘장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
## 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「3. 지원대상」,「5.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」에 명시된 기준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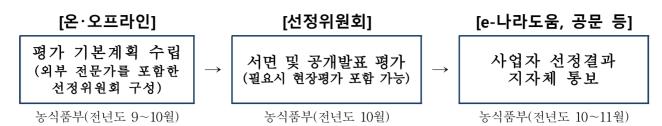
## Ⅱ / 사업추진체계

### 1. 사업신청단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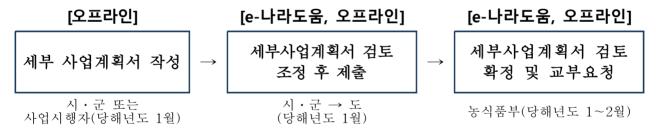
- 신청서 양식: [별지 제1호 서식] 사업신청서 참조
- 농식품부는 전년도 9~10월 중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, 각 사업시행기관은 **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신청 접수**를 실시(9~10월)
- 농업인,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
  - \*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, 농법법인이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, 필요할 경우 「농어업경영체육성법」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
  - 사업 신청시 지자체 담당자는 **신청자의 재무안정성<sup>1)</sup>, 사업능력<sup>2)</sup>,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<sup>3)</sup>. 중복편중지원여부<sup>4)</sup>. 지원 제외대상여부<sup>5)</sup> 등**을 면밀하게 검토
- 1) **재무안정성 :**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(e나라도움 검증)
- 2) 사업능력: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, 각종 의무사항(교부조건)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,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(오프라인 검증)
- 3) **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:**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(e나라도움 검증, 오프라인)
- 4) 중복편중지원여부 :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(e나라도움), 유사지금지원 여부(e나라도움, 오프라인)
- 5) **제외대상여부 :**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,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(e나라도움 등)

### 2. 사업자 선정단계



- 선정 평가시 인센티브/페널티 부여
  - < 인센티브(가점) >
  - ①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되거나,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동 신청(+5점)
  - ② 연초에 실시한 차년도 사업 수요조사 시 수요를 제출한 경우(+3점)
  - < 패널티(감점) >
  - ① 전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(시·도)에서 제출한 사업 전체(-3~-10점)
    - 전년도 전액 이월시 -10점, 집행률 30%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-7점, 50%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-5점, 50%이상~70%미만 -3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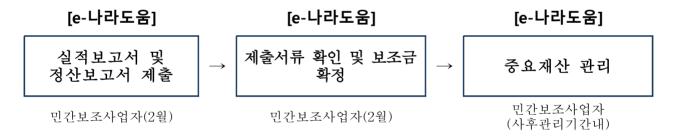
#### 3.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



-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서 확정 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
- 사업계획 변경절차
  - 직접·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,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
  -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
  - 사업비의 30% 미만 변경시 : 시·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(검토의견 포함)를 농식품부로 제출
  - \* 사업계획서상 보조비목 예산의 30% 범위 내에서 보조세목간 예산 변경·집행 가능
  - 사업비의 30% 이상 변경시 : 시·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변경승인 요청
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
  -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,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\*은 반드시 명시
  - \* (집행관리)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
  - \* (계약) 1) 총사업비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및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이 원칙(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하여 공고·입찰·계약체결 가능) 2)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(위탁계약)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, 계약체결 등 수행
  - \* (정산보고서 검증) 1)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)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
  - \* (중요재산)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「보조금법」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

#### 4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



-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(정산보고)를 등록
  -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
  - \*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(계약, 조달지연 등)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
  -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
  -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.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
  - \*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,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

-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
-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
  - 중요재산의 현황보고 및 공시는 「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」 제46조(별지 제3호)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
-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,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·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
  - \*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
-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.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,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.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\*를 확인한 경우「보조금법」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.
  - \*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(지급)받은 경우,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,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
  - 아울러, 「기본규정」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, 폐·휴업, 사업포기,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「기본규정」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
  -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
-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 가금, 수행배제,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·관리

# Ⅲ 평가 및 환류

## 1.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

○ 운영실적에 대한 사후관리

- 방 법 : 연1회(1월31일) 운영실적보고서 제출(시·도→농식품부)

- 점검항목: 생산 및 공급실적,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, 사업추진효과 등

- 사후관리 기간 : 사업 완료 후 7년

## 2. 평가

○ 사업평가 :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

○ 환류 :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